

알기 쉬운

공익법인회계기준



알기 쉬운

공익법인회계기준



발간사

공익법인은 교육, 의료, 사회복지,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고유의 공익적 가치 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34,843개의 공익법인들이 활동 중이며 정부예산의 20%에 육박하는 100조원 이상의 사업예산을 집행하고 있으며 매년 양적 성장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요 재원인 기부금과 보조금의 투명한 관리 및 사용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개선의 요청이 이어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정부는 공익법인의 회계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결산서류 공시 강화, 일정 규모이상 외부회계감사 의무화 등의 제도를 마련하였고, 2017년 이러한 제도의 근간이 되는 「공익법인회계기준」을 제정하였습니다.

제도 도입 초기의 부담을 고려하여 총자산가액 20억원 이하의 소규모 법인에 대하여는 회계기준의 한시적 적용유예를 두었습니다만, 올해 2020년부터는 모든 공익법인이 공익법인회계기준을 도입하여야 합니다.

그동안 상대적으로 간단한 회계처리에 익숙한 공익법인의 경우 새로운 회계기준에 대한 이해와 실행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이에 「알기 쉬운 공익법인회계기준」을 발행하게 되었습니다. 그간의 적용 경험을 바탕으로 핵심적인 사항을 추려서 구체적인 사례로 설명하여 현장감을 높이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여전히 보완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만, 모쪼록 새로운 기준을 처음 접하는 법인과 관계자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향후 적용과정에서의 애로사항들에 대해서도 의견을 청취하여 기준 및 지침들의 제개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이 책의 발간을 위해 바쁜 가운데도 정성을 다해주신 국가회계재정 통계센터 재정통계팀원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2020년 5월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소장

김완희



Contents

1 장

공익법인회계기준 도입

- | | |
|------------------------------|----|
| 1. 공익법인회계기준은 왜 만들어졌나요? | 8 |
| 2. 공익법인회계기준은 어떻게 제정되었나요? | 9 |
| 3. 공익법인회계기준 체계를 알고 싶어요 | 10 |
| 4. 공익법인회계기준 적용 대상을 알고 싶어요 | 11 |
| 5. 공익법인이 공시하는 결산서류는 무엇이 있나요? | 13 |

2 장

공익법인회계기준의 이해

- | | |
|-----------------|----|
| 1. 일반목적의 재무보고 | 16 |
| 2. 공익법인 통합재무제표 | 16 |
| 3. 발생주의와 복식부기 | 17 |
| 4. 재무제표의 종류 | 21 |
| 5. 공익법인의 특수성 반영 | 21 |



3장

재무제표 들어다보기

1. 재무제표의 이해	24
2. 재무상태표란?	25
3. 운영성과표란?	29
4. 주석이란?	30

4장

주요 계정과목 살펴보기

1절. 재무상태표	36
2절. 운영성과표	54

5장

특수한 회계처리

1. 통합재무제표 작성 및 내부거래 제거	72
2. 구분회계	73
3. 공익법인회계기준 최초 적용	74

[별지 제1호 서식] 재무상태표	76
[별지 제2호 서식] 운영성과표	7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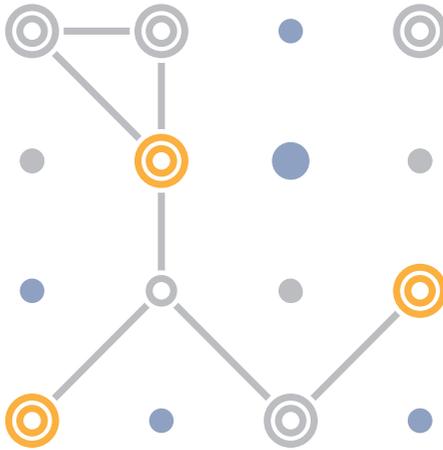


알기 쉬운
공익법인회계기준



1 장

공익법인회계기준 도입





1장 공익법인회계기준 도입

1. 공익법인회계기준은 왜 만들어졌나요?

- 사회적양극화와 불평등의 심화로 어느 때보다 공익법인의 역할이 중요하게 대두됨에 따라 공익법인이 설립 본래의 목적대로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장치가 중요합니다.
- 이에 정부에서 공익법인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외부회계감사 및 결산서류 공시 제도를 마련하였습니다.
- 공익법인의 결산서류 공시 및 외부회계감사 의무를 규정하였으나 공시와 회계감사의 기초가 되는 통일된 회계기준이 없어 이를 보완하기 위해 공익법인회계기준을 제정 하였습니다.
- 그동안 공익법인들은 명시적인 회계기준이 없어 서로 다른 회계기준을 적용하여 작성한 재무정보를 직접 비교하기에 어려웠으나, 공익법인회계기준을 적용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면 공익법인간의 재무정보를 직접 비교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공익법인이 동일한 회계처리를 수행해 재무제표를 공시하면 회계투명성이 높아지고 기부자들이 기부금의 운영내역을 신뢰할 수 있게 하며 기부문화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 그림 1-1 공익법인회계기준 제정배경

필요성	공익법인의 결산서류 공시 및 회계감사 의무는 있으나 관련 회계기준 부재
비교가능성	공동된 회계기준의 적용을 통해 공익법인간의 재무정보 비교가능성 제고
투명성 강화	공익법인이 공시하는 회계정보의 투명성 제고

2. 공익법인회계기준은 어떻게 제정되었나요?

- 2016년 12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4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3조의4를 신설하여 공익법인회계기준 제정과 공익법인회계기준 심의위원회의 설치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 정부 및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TF에서 한국회계기준원의 “비영리조직 회계기준 공개초안”을 기초로 공익법인회계기준 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 이후 기획재정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여 학계, 공익법인, 연구기관 등이 포함된 민간위원과 정부위원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공익법인회계기준의 심의를 진행하고 민간전문가 간담회 및 행정예고를 진행하였습니다.
- 2017년 11월 3일 유관부처 담당자, 각계 전문가 및 일반 국민 등을 대상으로 공익법인회계기준 마련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여 공익법인회계기준의 제정과 주요 내용에 관하여 소개하고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 2017년 12월 7일 기획재정부는 공익법인회계기준을 최종 고시하였고 2018년 1월 1일 이후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공익법인회계기준을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 2018년에는 공익법인회계기준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하여 회계기준의 이해를 돕고 실무에 활용할 수 있는 실무지침서를 마련하고, 관련 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그림 1-2 공익법인회계기준 제정 경과





3. 공익법인회계기준 체계를 알고 싶어요

- 공익법인회계기준 법령체계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공익법인회계기준(고시), 공익법인회계기준 실무지침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표 1-1 공익법인회계기준 체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계감사의무 및 결산서류등의 공시의무를 이행할 때 적용할 회계기준 규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3조의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의위원회 심의 및 회계기준 및 회계제도 규정
공익법인회계기준 (기획재정부 고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장 총칙 (제 1조 ~ 9조) · 제2장 재무상태표 (제 10 ~ 22조) · 제3장 운영성과표 (제 23조 ~ 32조) · 제4장 자산·부채의 평가 (제 33조 ~ 39조) · 제5장 주식 (제 40조 ~ 43조) · 부칙 (제 1조 ~ 5조) · 별지 서식 1호 2호
공익법인회계기준 실무지침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익법인회계기준 제정에 대한 기본원리 · 공익법인회계기준 적용범위 · 재무제표 개요 및 작성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장 재무제표 작성원칙 · 제2장 재무상태표 해설 및 실무사례 · 제3장 운영성과표 해설 및 실무사례 · 제4장 주식 해설 및 실무사례 · 제5장 기타 재무제표 작성 원칙 · 부록

Q 공익법인회계기준은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나요?

📍 공익법인회계기준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검색하거나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www.kipf.re.kr/gafsc)<재정통계>공익법인회계기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익법인회계기준 실무지침서는 기획재정부(www.moef.go.kr)의 정책/정책자료/정책계시판 또는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www.kipf.re.kr/gafsc)의 재정통계/공익법인회계기준 실무지침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공익법인회계기준 적용 대상을 알고 싶어요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언급하고 있는 공익법인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표 1-2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공익법인 범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자를 공익법인으로 함

1.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
2.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을 설립·경영하는 사업
3.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인 운영하는 사업
4. 「의료법」에 따른 의료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5. 「법인세법」 제24조제3항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받는 자가 해당 기부금으로 운영하는 사업
6.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 각 목에 의한 지정기부금단체등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제5호에 따른 기부금대상민간단체가 운영하는 고유목적사업
7.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2호다목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받는 자가 해당 기부금으로 운영하는 사업

- 공익법인회계기준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규정하는 공익법인이 회계감사의무 및 결산서류 등의 공시 의무를 이행할 때 적용하여야 합니다.
- 다만, 종교법인, 의료법인, 학교법인 및 다른 법령에 발생주의·복식부기에 따른 회계 처리 및 재무제표 작성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공익법인회계기준에 우선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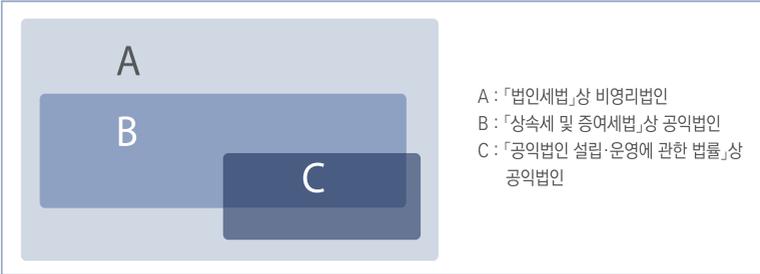
그림 1-3 설립근거법 유형별 의무공시 공익법인 현황



* 출처 : 한국가이드스타, NPO가이드스타 29호(2019년3월호)



그림 1-4 법률에 따른 공익법인 범위 비교



* 출처 : 국세청, 2019 공익법인 세무안내

- 2018년까지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상의 공익법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 공익법인에 완전 포함되었으나, 2019년부터는 「법인세법」 상 기부금 단체에 해당하는 경우 등 일정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공익법인에 해당합니다.
- 단, 2018년까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상의 공익법인은 2020년까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공익법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부칙(2018.02.13.)

제12조 (공익법인등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2018년 12월 31일에 종전의 제12조제5호부터 제8호까지 및 제11호에 따라 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자는 제12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0년 12월 31일까지 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공익법인의 범위에서 제외되는데 공익법인회계기준을 적용해야 하나요?



④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개정(2018. 2. 13.)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공익법인의 범위에서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이 제외되었으나, 부칙 <대통령령 제28638호, 2018. 2. 13.>에 따라 2020년 12월 31일까지 공익법인에 해당하며 「법인세법」에 따라 법정기부금 및 지정기부금 받아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공익법인에 해당되어 공익법인회계기준을 적용해야 합니다.

5. 공익법인이 공시하는 결산서류는 무엇이 있나요?

-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규정하는 공익법인 중 종교법인을 제외한 모든 공익법인은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국세청 홈택스에 결산서류를 공시하여야 합니다.
- 공익법인이 공시해야 하는 서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3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 회계감사를 받을 의무가 있는 공익법인은 감사보고서와 감사보고서에 첨부된 재무제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내부감사의 감사확인서가 아니라 외부회계감사를 수행한 회계감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함을 유의해야 합니다.

표 1-3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한 공익법인 결산공시 내용

NO.	내용
1	재무제표
2	기부금 모집 및 지출 내용
3	해당 공익법인등의 대표자, 이사, 출연자, 소재지 및 목적사업에 관한 사항
4	출연재산의 운용소득 사용명세
5	회계감사를 받을 의무가 있는 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사보고서와 그 감사보고서에 첨부된 재무제표
6	주식보유 현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국세청 홈택스에 공시한 공익법인의 결산서류는 누구나 확인하여 열람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의 우측 하단의 '세금종류별 서비스'에서 '공익법인공시'를 선택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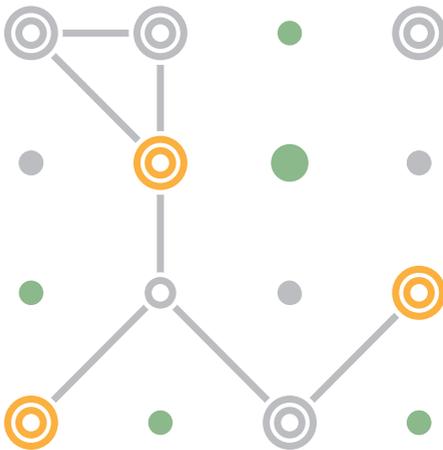
- '공익법인 결산서류등 공시'를 선택한 후 '법인명 찾기'를 선택하여 공익법인의 결산서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익사업유형 및 공시기간을 지정하여 조회할 수도 있습니다.

알기 쉬운
공익법인회계기준



2장

공익법인회계기준의 이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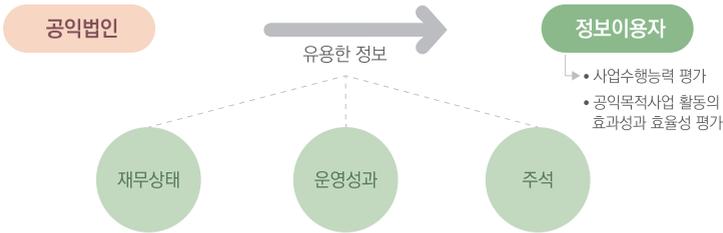


2장 공익법인회계기준의 이해

1. 일반목적의 재무보고

- 공익법인의 재무보고 목적은 기부자 등 이해관계자의 합리적 의사결정에 유용한 재무정보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공익법인회계기준은 공익법인의 재무보고를 위해 필요한 통일된 회계규칙입니다.

그림 2-1 공익법인의 재무보고 목적



2. 공익법인 통합재무제표

- 공익법인회계기준은 공익법인을 하나의 작성단위로 보아 통합하여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통합된 보고실체에 대한 정보를 통해 공익법인 전체의 재무상태 및 운영성과를 파악하기 용이하여 보다 목적적합한 재무정보 제공이 가능합니다.

표 2-1 공익법인의 재무제표 체계

재무상태표			운영성과표		
통합	공익목적	기타	통합	공익목적	기타
자산	자산	자산	사업수익 (-)사업비용 사업이익	사업수익 (-)사업비용 사업이익	사업수익 (-)사업비용 사업이익
부채	부채	부채	사업외수익 (-)사업외비용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전입액 고유목적사업준비금환입액 법인채차감전담기운영이익	사업외수익 (-)사업외비용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전입액 고유목적사업준비금환입액 법인채차감전담기운영이익	사업외수익 (-)사업외비용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전입액 고유목적사업준비금환입액 법인채차감전담기운영이익
순자산	순자산	순자산	(-)법인세비용 담기운영이익	(-)법인세비용 담기운영이익	(-)법인세비용 담기운영이익

3. 발생주의와 복식부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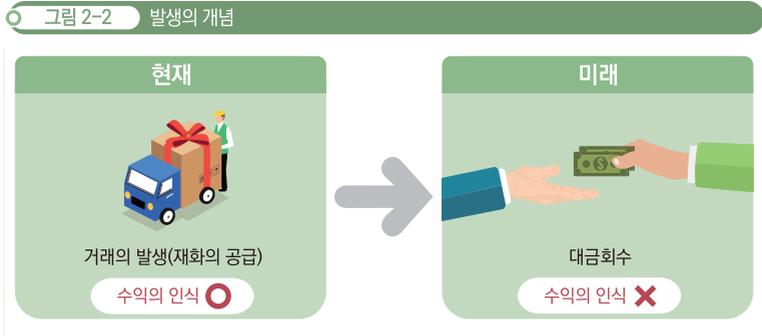
- 공익법인회계기준은 발생주의와 복식부기 회계원리를 기본원칙으로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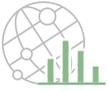
(1) 발생주의란?

- 발생주의는 거래를 인식하는 방법 중 하나로 현금의 입·출금과 관계없이 경제적 거래가 발생하는 시점에 거래를 기록합니다. 즉, 발생주의 회계는 발생과 이연의 개념이 포함됩니다.
- 반면에, 현금주의는 현금을 수취하거나 지급하는 시점에 수익과 비용을 인식하는 방법입니다.

① 발생

- 현금교환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거래가 발생하여 수익이나 비용을 인식하는 회계 처리 과정입니다. 발생과 관련한 회계과목에는 미수수익과 미지급비용 등이 있습니다.





(2) 복식부기란?

- 일반적으로 거래를 장부에 정리하고 기록하는 절차를 부기라고 합니다.
- 복식부기는 부기하는 방법 중 하나로 하나의 거래를 이중으로 기록하는 방식입니다. 복식부기에서는 거래의 원인과 결과를 각각 왼쪽(차변)과 오른쪽(대변)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 차변과 대변에 기록된 금액의 합계는 반드시 일치해야 합니다. 따라서 차변의 합계액과 대변의 합계액이 불일치하는 경우 기록의 오류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기능을 복식부기의 자기검증기능이라고 합니다.

표 2-2 복식부기의 원리 및 예시

왼쪽 - 차변	오른쪽 - 대변
자산의 증가	자산의 감소
부채의 감소	부채의 증가
순자산의 감소	순자산의 증가
비용의 발생	수익의 발생

(예시1) A공익법인이 사무실에서 사용할 노트북을 2,000,000원에 구입하였다.

- A공익법인의 노트북(자산)이 2백만원 증가하고 동시에 현금(자산)이 2백만원 감소하였습니다.
- 분개

(차) 비품 2,000,000	(대) 현금 2,000,000
자산의 증가	자산의 감소

(예시2) A공익법인이 은행에서 10,000,000원을 차입하였다.

- A공익법인의 현금(자산)이 천만원 증가하고 동시에 차입금(부채)가 천만원 증가하였습니다.
- 분개

(차) 현금 10,000,000	(대) 차입금 10,000,000
자산의 증가	부채의 증가

그림 2-4 단식부기와 복식부기



[단식부기 기록방식]



[복식부기 기록방식]

4. 재무제표의 종류

- 공익법인회계기준의 재무제표는 재무상태표, 운영성과표 그리고 주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재무상태표는 회계연도 말 현재 공익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 부채, 순자산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재무보고서입니다.
- 운영성과표는 한 회계연도 동안의 모든 수익과 비용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 주석은 재무상태표와 운영성과표에 필요한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합니다.

5. 공익법인의 특수성 반영

- 공익법인회계기준은 공익법인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공익법인 회계처리의 중요한 사항에 대한 원칙을 규정하였습니다.

표 2-3 공익법인의 특수한 회계처리 예시

구 분	주요 내용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잉여금 처분 및 부채 인식 모두 허용
순자산의 구분	기본순자산, 보통순자산, 순자산조정으로 구분
기부금 등 수익인식 조건 및 분류	기부금의 수익인식시점 : 실제 기부를 받는 시점
비용의 인식 및 분류	(기능별) 사업수행비용, 일반관리비용, 모금비용 (성격별) 분배비용, 인력비용, 시설비용, 기타비용
자산과 부채의 평가	유형자산 재평가, 매도가능증권의 평가
주석에 관한 사항	필수적 주석 기재사항 15개

- 한편, 공익법인회계기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기업회계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공익법인회계기준 제6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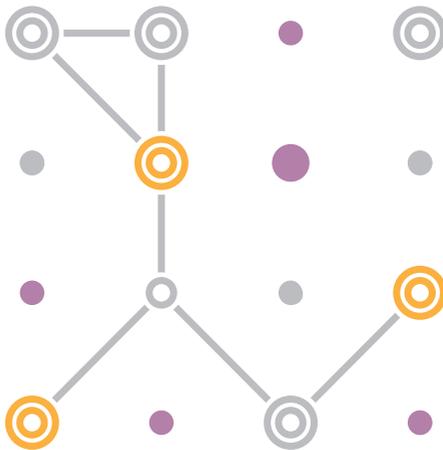
- ① 공익법인의 회계처리 및 재무제표 작성에 관하여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른다.

알기 쉬운
공익법인회계기준



3장

재무제표 들어다보기





3장 재무제표 들여다보기

1. 재무제표의 이해

- 재무제표란 재무적 관점에서 공익법인의 활동에 관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일정한 양식의 보고서를 의미합니다.
- 공익법인회계기준에서 재무제표는 재무상태표, 운영성과표, 주석으로 구성됩니다.

표 3-1 재무제표의 종류

종 류	포함하는 정보
재 무 상 태 표	일정시점 공익법인의 재무상태(자산, 부채, 순자산)에 관한 정보
운 영 성 과 표	일정기간 동안의 재무성과(수익, 비용)에 관한 정보
주 석	재무상태표와 운영성과표에 필요한 추가적 정보

표 3-2 재무제표의 관계



* 순자산의 변동에 관한 사항은 필수적주석기재사항

2. 재무상태표란?

- 재무상태표란 회계연도 말 공익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과 부채, 그리고 순자산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재무보고서입니다.

그림 3-1 재무상태표의 구성

재무상태표 ← 보고서 명칭 2X19년 12월 31일 현재 2X18년 12월 31일 현재 ← 작성기준일	
AA복지재단 ← 공익법인명	(단위: 원) ← 단위
자산 유동자산 현금및현금성자산 단기투자자산 비유동자산 투자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	부채 유동부채 비유동부채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순자산 기본순자산 보통순자산 순자산조정

- 재무상태표는 자산과 부채, 순자산 3가지 구성요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때 자산총액은 부채와 순자산 총액의 합과 반드시 일치해야 하는데 이를 재무상태표 등식 또는 회계등식이라고 합니다.

표 3-3 회계 등식

자산	=	부채	+	순자산
----	---	----	---	-----



- 재무상태표는 다음과 같은 원칙에 따라 작성해야 합니다.

표 3-4 재무상태표 작성기준

구분	작성기준
유동/비유동의 구분	자산과 부채는 1년을 기준으로 유동/비유동 항목으로 구분
유동성배열	유동성이 높은 항목부터 먼저 표시하며, 유동자산 내에서는 현금및현금성자산, 단기투자자산, 매출채권 등의 순서로 표시
총액주의	채권/채무를 상계하지 않고 총액으로 표시
미결산항목 및 비망계정	가지금금, 가수금 등의 미결산계정 정리

(1) 자산의 정의, 종류 및 표시

- 자산이란 공익법인이 소유하고 있으며 미래에 경제적 효과와 이익을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되는 자원을 의미합니다.
-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재산'과 유사한 개념으로 공익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금융자산, 부동산, 콘텐츠 등의 무형자산 등을 포함합니다.

그림 3-2 자산의 종류



- 자산은 크게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으로 구분하며, 비유동자산은 투자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 기타비유동자산으로 구분합니다.

표 3-5 재무상태표 자산의 종류

구 분		설 명
유동자산		회계연도 말 기준으로 1년이내 현금화 가능한 자산으로 현금및현금성자산, 단기투자자산, 수취채권, 재고자산 등이 있다.
비유동자산	투자자산	장기적 수익 획득 및 자금운용을 목적으로 보유하는 자산으로 장기금융상품, 장기투자증권, 장기대여금 등이 있다.
	유형자산	사업활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자산으로 토지,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등이 있다.
	무형자산	물리적인 형태가 없지만 미래의 경제적 효익이 기대되는 자산으로 지식재산권, 개발비, 소프트웨어 등이 있다.
	기타 비유동자산	투자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에 속하지 않는 비유동자산으로 임차보증금, 전세권 등이 있다.

(2) 부채의 정의, 종류 및 표시

- 부채는 공익법인이 미래에 갚아야할 빚으로 금전적 채무 뿐 아니라 공익법인이 이행해야 할 의무를 모두 포함합니다.

공익법인회계기준은 부채를 과거 사건의 결과 공익법인이 부담하고 있고 미래에 자원이 유출되거나 사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의무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림 3-3 부채의 종류



지급채무



차입금



퇴직급여충당부채



- 부채는 유동부채, 비유동부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구분됩니다.

표 3-6 재무상태표 부채의 종류

구분	설명
유동부채	회계연도 말 기준으로 1년 이내 상환해야하는 부채로 매입채무, 미지급금, 미지급비용 등이 포함된다.
비유동부채	회계연도 말 기준으로 1년 이후 만기가 도래하는 부채로 차입금, 퇴직급여충당부채 등이 있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법인세법」 제 29조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이나 지정기부금에 사용하기 위해 미리 비용으로 계상하면서 동일한 금액으로 인식한 부채계정이다.

(3) 순자산의 정의, 종류 및 표시

- 순자산이란 재무상태표 상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잔여금액을 말합니다.

표 3-7 순자산의 개념

재무상태표			
자산	5억원	부채	3억원
		순자산	2억원

공익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 5억원 중에서 부채 상환에 사용하지 않고 공익법인이 사업 운영에 사용할 수 있는 자원은 2억원임을 알 수 있습니다.

- 순자산은 기본순자산, 보통순자산, 순자산조정으로 구분됩니다.

표 3-8 순자산 구분

종류	설명
기본순자산	사용이나 처분에 영구적 제약이 있는 순자산이다.
보통순자산	기본순자산이나 순자산조정이 아닌 순자산으로 잉여금과 적립금으로 구분된다.
순자산조정	순자산의 가감성격 항목으로 매도가능증권평가손익, 유형자산재평가이익 등이 있다.

3. 운영성과표란?

- 운영성과표란 회계연도의 모든 수익과 비용을 나타내는 재무보고서로 공익법인의 사업 수행에 따른 성과 및 결과를 평가하는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 운영성과표는 사업수익에서 사업비용을 차감하고 사업외수익을 가산, 사업외비용을 차감하여 당기운영이익을 산출하여 표시합니다.
- 수익과 비용은 총액으로 기록하고 상계하여 순액으로 표시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이자수익과 이자비용이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 이를 상계하여 차액만을 이자수익 또는 이자비용만으로 표시해서는 안 됩니다.

○ 그림 3-4 운영성과표

운영성과표 ← 보고서 명칭	
2X19년 1월 1일부터 2X19년 12월 31일 까지 2X18년 1월 1일부터 2X18년 12월 31일 까지 ← 작성기간	
AA복지재단 ← 공익법인명	(단위: 원) ← 단위
구분	내용
사업수익	사업의 결과 경상적으로 발생하는 자산의 증가 또는 부채의 감소
(-) 사업비용	사업의 결과 경상적으로 발생하는 자산의 감소 또는 부채의 증가
= 사업이익(손실)	
(+) 사업외수익	사업수익이 아닌 수익 또는 차익
(-) 사업외비용	사업비용이 아닌 비용 또는 차손
(-)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전입액	「법인세법」에 따라 소득 중 일부를 고유목적사업이나 지정 기부금에 지출하기 위하여 적립한 금액
(+)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환입액	「법인세법」에 따라 목적사업에 사용되었거나 미사용되어 임의 환입된 금액
= 법인세비용차감전 당기운영이익(손실)	
(-) 법인세비용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법인세비용 또는 중소기업회계처리 특례에 따른 법인세비용
= 당기운영이익(손실)	



4. 주석이란?

- 주석은 재무상태표 및 운영성과표에 표시된 정보 이외의 필요한 정보를 추가적으로 제공합니다.
- 주석에는 재무제표 이해를 돕는 일반사항에 관한 정보, 재무제표 본문에 표시된 항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정보, 재무제표 본문에 표시할 수 없는 회계사건 및 그 밖의 상황으로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거나 이해를 위하여 추가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기재합니다.
- 공익법인회계기준은 모든 기관이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할 주석사항을 15가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표 3-9 필수적 주석기재사항

No.	내 용
1	공익법인의 개황 및 주요사업 내용
2	공익법인이 채택한 회계정책
3	사용이 제한된 현금및현금성자산의 내용
4	차입금 등 현금 등으로 상환하여야 하는 부채의 주요 내용
5	현물기부의 내용
6	제공한 담보·보증의 주요 내용
7	특수관계인과의 중요한 거래의 내용
8	총자산 또는 사업수익금액의 10%이상에 해당하는 거래내역
9	회계연도 말 현재 진행 중인 소송 사건의 내용, 소송금액, 진행 상황 등
10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수정에 관한 사항
11	기본순자산의 취득원가와 공정가치를 비교하는 정보에 관한 사항
12	순자산의 변동에 관한 사항
13	유형자산 재평가차액의 누적금액
14	유가증권의 취득원가와 재무제표 본문에 표시된 공정가치를 비교하는 정보
15	그 밖에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주석기재가 요구되는 사항 중 공익법인에 관련성이 있고 그 성격이나 금액이 중요한 사항

(1) 사용이 제한된 현금및현금성자산의 내용

- 사용이 제한된 현금및현금성자산을 보유한 공익법인은 사용 제한 자산의 상세내역 및 제한 사유를 주석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 사용이 제한된 현금및현금성자산에는 차입금 담보, 당좌개설 보증금 등의 사유로 인해 사용이 제한된 자산 뿐 아니라 기본재산과 같이 주무관청의 허가 없이 사용이나 처분이 불가능한 자산도 포함됩니다.
- 상기 주석은 현금및현금성자산이 아니더라도 사용의 제한이 있는 금융상품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모두 포함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이 때 주석명칭은 사용이 제한된 금융상품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표 3-10 사용이 제한된 금융상품 예시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사용이 제한된 금융상품 등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계정과목	종류	금융 기관명	금 액		사용 제한
			당기말	전기말	내용
단기투자자산	보통 예금	ZZ은행	2,000,000	0	지급보증 담보제공
	ELS	OO증권	5,000,000	5,000,000	기본재산
	소 계		7,000,000	5,000,000	
장기투자자산	정기 예금	ZZ은행	2,000,000	1,000,000	차입금 담보
	소 계		2,000,000	1,000,000	
합 계			9,000,000	6,000,000	



(2) 현물기부의 내용

- 공익법인이 한 회계기간 동안 기부 받은 현물자산의 정보를 기재합니다.
- 해당 주석은 계정과목 별로 합산해서 작성하면 됩니다. 회계기간 동안 기부 받은 자산이 많은 경우 주요 기부자산이나 기부자에 한하여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형식으로 작성하면 됩니다.

표 3-11 현물기부의 내용 주석 예시

당기 중 현물로 기부 받은 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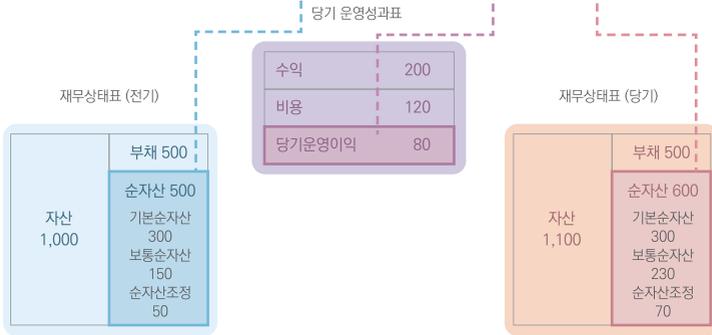
내역	금액	기부자
토지	200,000,000	(주)AA
건물	100,000,000	(주)AA
차량운반구	30,000,000	(주)XX자동차

(3) 순자산의 변동에 관한 사항

- 순자산의 변동에 관한 사항 주석은 한 회계기간 동안의 순자산 변동내역에 대한 정보와 공익법인의 순자산 크기를 포괄적이고 체계적으로 보여줍니다. 이는 기업 회계의 자본변동표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이 주석은 기본순자산, 보통순자산, 순자산조정 각각의 기초잔액, 회계기간 동안의 변동사항 및 기말잔액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순자산 변동에 관한 사항의 내용은 재무상태표 및 운영성과표 금액과 연계되므로 다음의 사항을 유의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 순자산의 변동에 관한 사항 주석의 당기초 금액은 전기말 재무상태표의 순자산과 일치합니다.
 - 당기운영이익(손실)은 보통순자산 잉여금 옆에 기입하며, 이 금액은 당기 운영성과표의 당기운영이익(손실) 금액과 일치합니다.
 - 당기초 금액에서 기본순자산의 증감, 당기운영이익(손실) 등의 순자산 변동내역을 반영하면 당기말 금액이 산출되며, 이 금액은 재무상태표의 당기말 순자산 금액과 일치해야 합니다.

표 3-12 순자산 변동에 관한 사항과 재무제표의 관계

과 목	기본 순자산	보통순자산		순자산 조정	총 계
		적립금	잉여금		
당기초	300	30	120	50	500
기본순자산 증감					
당기운영이익(손실)			80		80
매도가능증권평가이익				20	20
적립금 전입					
당기말	300	30	200	70	6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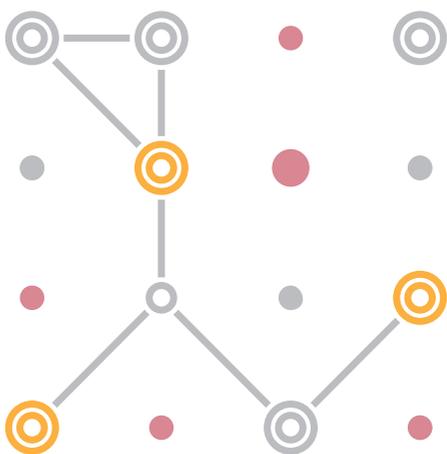


알기 쉬운
공익법인회계기준



4장

주요 계정과목 살펴보기





4장 주요 계정과목 살펴보기

1절. 재무상태표

1. 유동자산

- 짧은 기간 내에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자산으로 공익법인회계기준에서는 회계연도 말로부터 1년 이내에 현금화되거나 실현될 것으로 예상되는 자산을 유동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 유동자산에는 현금및현금성자산, 단기투자자산, 매출채권/미수금, 재고자산, 선급비용, 미수수익, 선급금 등이 포함됩니다.

표 4-1 유동자산의 분류

구 분	설 명
현금및현금성자산	현금, 수시입출금 예금, 현금성자산
단 기 투 자 자 산	1년 이내 만기가 도래하는 정형화된 금융상품, 단기 자금운용목적의 유가증권, 회수기한이 1년 이내 도래하는 대어금
매출채권/미수금	거래의 대가로 상대방으로부터 현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재 고 자 산	판매를 위해 보유하고 있는 자산 또는 고요목적사업 활동에 투입될 소모품 형태의 자산
선 급 비 용	선급한 비용 중 1년 이내 비용으로 인식될 금액
미 수 수 익	기간 경과에 따라 발생하는 당기 수익 중 아직 받지 못한 금액
선 급 금	재화 구입 등을 위해 미리 지급한 금액

(1) 현금및현금성자산과 단기투자자산

- 현금및현금성자산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통화(지폐, 주화), 수시 입출금 예금과 필요에 따라 언제든지 현금화 가능한 통화대용증권(타인발행당좌수표, 자기앞수표 등)을 의미합니다. 이 밖에도 취득시점을 기준으로 만기일이 3개월 이내의 금융자산도 포함됩니다.

주의사항

- 1) 요구불예금(보통예금, 당좌예금 등)에 사용이 제한되어 있는 경우에는 현금및현금성자산이 아닌 장·단기 금융상품으로 분류해야 하며, 그 내용을 주식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 2) 현금성자산에 속하는 단기금융자산은 회계연도 말 기준이 아닌 취득일을 기준으로 만기가 3개월 이내의 금융상품이어야 합니다.

그림 4-1 현금및현금성자산



- 단기투자자산이란 공익법인이 여유자금 활용 목적으로 보유하는 자산 중 1년 이내에 만기가 도래하는 자산을 말합니다. 단기금융상품, 단기대여금, 단기매매증권 등이 포함됩니다.

주의사항

- 1) 투자자산에 속하는 매도가능증권이나 만기보유증권 중 1년 이내에 실현되는 부분은 단기 투자자산으로 분류됩니다.
- 2) 단기금융상품, 단기대여금, 단기매매증권 등은 단기투자자산 계정에 통합하여 표시하거나 공익법인의 판단에 따라 세분화하여 개별항목(단기금융상품, 단기매매증권 등)으로 표시 할 수도 있습니다.

- 단기금융상품은 정기예금, 정기적금 등 정형화된 금융기관의 상품으로 1년 이내에 만기가 도래하는 금융상품 중 현금성자산에 속하지 않는 금융상품입니다.
- 단기매매증권은 단기간 매매차익을 목적으로 취득한 유가증권으로 매수와 매도가 적극적이고 빈번하게 발생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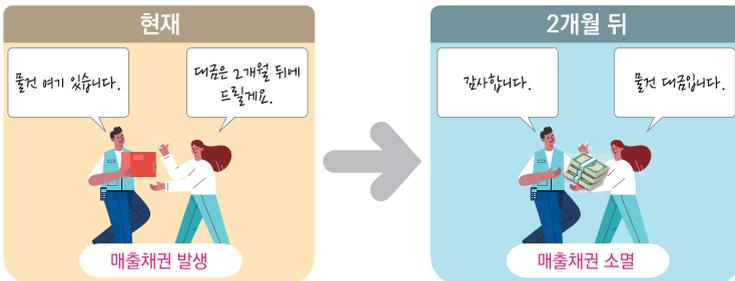
(2) 수취채권

- 매출채권은 재화 및 서비스를 외상으로 판매하고 대금은 나중에 받기로 한 것을 말합니다. 아직 판매대금은 들어오지 않았지만, 미래에 경제적 효익(재화 판매대금 및 서비스 제공대가)의 유입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자산으로 인식해야 합니다.
- 미수금은 매출채권과 유사한 개념으로 주된 사업 이외의 거래로 받아야할 금액 중 아직 받지 못한 금액입니다.

주의사항

1년을 초과하여 회수될 것으로 예상되는 수취채권은 장기매출채권 또는 장기미수금으로 분류합니다. 이 때 회계연도 말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장기수취채권 중 1년 이내에 실현될 부분은 유동자산으로 재분류해야 합니다.

그림 4-2 수취채권의 이해



- 수취채권은 못 받을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회계연도 말 아직 확실하지 않지만 수취채권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큰 경우 그 금액을 추정하여 채권의 가치를 평가합니다. 또한 추정 손실을 비용으로 반영하는데 이 과정을 대손처리라고 합니다. 대손추정액은 대손충당금 계정을 사용하여 수취채권 차감항목으로 기록합니다.

(예시) 장애인직업재활센터에서는 화장지를 생산하여 기업에 납품하고 있습니다. 현재 외상으로 매출한 100만원 중 원금 일부를 회수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추정 대손액은 5만원입니다.

구 분	금 액	
매 출 채 권	100만원	← 매출채권 총액
대 손 충 당 금	(5만원)	
매출채권 장부금액	95만원	← 장부금액

해당 시설은 100만원 짜리의 매출채권을 보유하고 있으나 이 중 5만원은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매출채권의 가치는 95만원입니다. 재무제표에는 매출채권의 총액 100만원에서 대손추정액 5만원을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하여 장부금액이 95만원임을 나타냅니다.

Q 기부자가 신용카드로 기부를 하였습니다. 카드사로부터 기부자가 결제한 금액 중 신용카드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이 입금되었습니다. 이 때 차감된 금액은 대손상각비 인가요?

A 해당 비용은 대금을 회수하지 못해 발생한 것이 아니라 카드사 이용에 따라 발생한 수수료입니다. 따라서 대손상각비가 아닌 지급수수료 계정으로 회계처리 해야 합니다.

(예시) (차) 현금 및 현금성자산 99,000 (대) 미수금 100,000
 지급수수료 1,000



2. 투자자산

(1) 투자자산이란

- 장기적 수익획득 및 자금운용 등 투자목적으로 보유하는 자산으로 장기성 예적금, 장기투자증권, 장기대여금 등이 포함됩니다. 단기투자목적으로 보유하거나 만기가 회계연도 말로부터 1년 이내에 도래하는 자산은 단기투자자산으로 분류합니다.

그림 4-3 투자자산의 종류



예·적금



장기투자증권



장기대여금

- 장기성 예적금은 만기일이 회계연도 말로부터 1년 이후 도래하는 정기예금, 정기적금, 사용이 제한된 예금 및 기타 정형화된 금융상품이며, 장기금융상품이라고도 합니다.



금융상품에 사용제한이 걸려있는 경우 금융상품의 유동, 비유동을 판단할 때 사용제한 기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나요? 기본재산의 경우 영구적으로 사용 제한이 걸린 것으로 볼 수 있는데 그렇다면 기본재산은 모두 비유동자산으로 구분하면 될까요?

💡 금융자산은 회계연도 말 잔여 만기 기간에 따라 유동자산 또는 비유동자산으로 구분됩니다. 따라서 기본재산이라고 해서 모두 비유동자산으로 구분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기본재산인 금융자산이 존재하는 경우 사용이 제한된 현금 및 현금성자산 주석에 해당 자산이 기본재산으로 사용 제한되어 있음을 명시해야 합니다.



- 대여금이란 상대방에게 빌려준 금전을 의미하며, 이 중에서 회수기한이 회계연도 말 기준으로 1년 이후인 경우를 장기대여금이라고 합니다.

주의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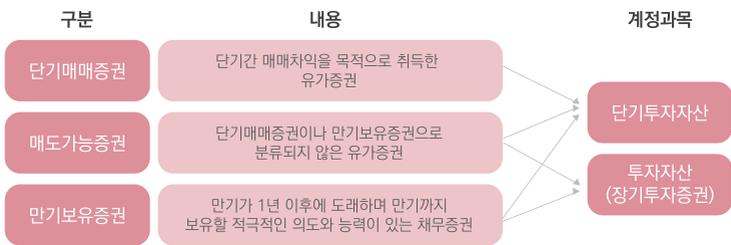
공익법인의 임원·종업원·관계회사 등 특수관계자 대여금의 경우 실무적으로 기중에 가지금급으로 회계처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말 결산시점에는 대여금 계정과목으로 재무상태표에 표시해야 합니다.

- 투자증권이란 투자목적으로 보유한 유가증권을 의미합니다.

(2) 투자증권의 분류 및 평가

- 투자증권은 지분증권(주식, 수익증권, 옵션 등)과 채무증권(국채, 공채, 사채 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 투자증권은 취득목적과 보유의도 및 능력에 따라 단기매매증권, 매도가능증권, 만기보유증권으로 분류되며, 재무상태표에는 보유기간에 따라 단기투자자산 또는 투자자산으로 표시합니다.
- 단기투자자산으로 분류되는 투자증권은 단기매매증권과 회계연도 말 기준으로 1년 이내에 실현되는 매도가능증권이나 만기보유증권입니다.

표 4-2 투자증권의 분류



주의사항

- 1) 장·단기 분류(단기투자자산 또는 투자자산)의 적정성은 회계연도 말마다 재검토해야 합니다.
- 2) 투자증권을 재무상태표에 표시할 때는 '투자자산-장기투자증권' 계정에 통합하여 표시하거나 공익법인의 판단에 따라 세분화하여 개별항목(매도가능증권, 만기보유증권 등)으로 분류 표시할 수도 있습니다.

- 투자증권은 매 회계연도 말 공정가치로 평가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만기보유증권은 상각후원가로 매도가능증권 중 시장성 없는 지분증권은 취득원가로 평가합니다.

표 4-3 투자증권 평가

구분	평가방법	평가손익의 인식	
		인식방법	계정과목
단기매매증권	공정가치	당기손익	단기매매증권평가손익
매도가능증권	공정가치	순자산조정	매도가능증권평가손익
	취득원가* (평가하지않음)	-	-
만기보유증권	상각후원가**	당기손익	이자수익

* 시장성 없는 지분증권은 취득원가로 평가
 ** 최초 취득원가에서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계산한 할인 또는 할증차금의 누계액을 가산하거나 차감한 금액



3. 유형자산

(1) 유형자산이란

- 유형자산이란 재화의 생산, 서비스의 제공, 타인에 대한 임대 등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보유하고 1년을 초과해서 사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물리적 형태가 있는 자산을 말합니다.
- 유형자산은 토지,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차량운반구, 건설중인자산 등으로 구분됩니다.

표 4-4 유형자산 과목

종 류	설 명
토 지	대지, 임야, 전답, 건물부속토지, 공장부지
건 물	사무실, 창고, 작업장, 냉난방 등 기타 건물부속설비
구 축 물	옥외주차장, 회사 내 조성한 공원 내 설비(벤치 등)
기 계 장 치	기계, 운송설비 등
차 량 운 반 구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기타 유형 자산	비품(복사기, 컴퓨터, 책상 등 집기), 예술작품, 유물
건설 중인 자산	유형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계약금 및 중도금

- 유형자산은 구입가격과 제작원가에 취득부대비용을 더한 금액을 취득원가로 인식합니다. 취득부대비용은 취득세, 설계비 등과 같이 유형자산을 취득할 때 필요한 비용들입니다.

그림 4-4 유형자산의 취득원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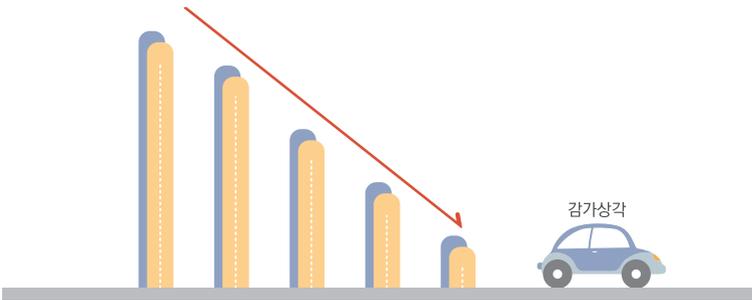
(2) 유형자산의 감가상각

- 감가상각이란 유형자산의 취득원가를 보유하는 회계기간 동안 합리적인 방법에 따라 비용으로 배분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주의사항

유형자산 중에서 시간의 경과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가 감소하지 않는 토지와 전사·교육·연구 등의 목적으로 보유중인 예술작품이나 유물 등은 감가상각하지 않습니다.

그림 4-5 감가상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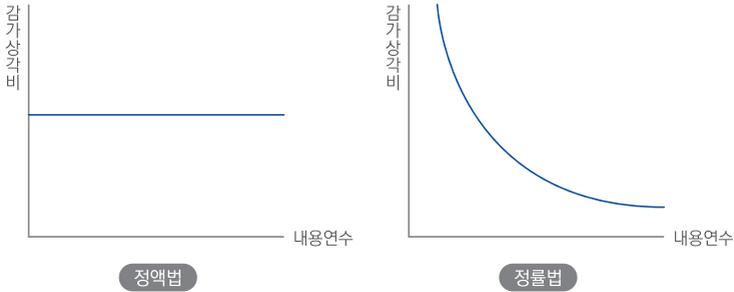
- 감가상각방법에는 정액법, 정률법, 연수합계법, 생산량비례법이 있으며, 각 자산의 경제적 효익이 소멸되는 형태를 고려하여 상각방법을 결정해야 합니다.

표 4-5 감가상각 방법

구 분	계산 방법	감가상각비 인식형태
정 액 법	(취득원가-잔존가치)/내용연수	매년 일정한 금액으로 인식
정 률 법	(취득원가-감가상각누계액)×상각률	매년 일정한 비율로 감소
연 수 합 계 법	(취득원가-잔존가치)× (잔여내용연수/내용연수합계)	매년 상각 금액 감소 (감가상각률이 점차 낮아짐)
생 산 량 비 례 법	(취득가액-잔존가치) ×(당기생산량/추정총생산량)	생산량에 비례하여 상각비 인식



● 그림 4-6 정액법과 정률법 감가상각 비교



- 유형자산은 재무상태표에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을 차감하는 형태로 표시합니다. 감가상각누계액이란 매년 감가상각으로 비용 처리한 금액의 누적액입니다.

(예시) 2x18년 1월 1일 A공익법인은 사회복지시설 운영 목적으로 건물을 1.2억원에 취득하였습니다. A공익법인은 건물을 정액법으로 상각하고 있고 건물의 잔존가치는 2천만원, 내용연수는 10년입니다.

$$\begin{aligned} \text{감가상각비} &= (\text{취득원가} - \text{잔존가치}) / \text{내용연수} \\ &= (1.2\text{억원} - 2\text{천만원}) / 10\text{년} = 1,000\text{만원} \end{aligned}$$

	x18년	x19년	x20년	x21년	x22년	x23년	x24년	x25년	x26년	x27년
취득 원가	1.2억원									
감가 상각	1,000만									
잔존 가치										2,000만

정액법으로 상각하므로 감가상각비용은 매년 1,000만원(1억원 ÷ 10년) 씩 일정하게 발생 합니다. 취득 후 2년이 지났으므로 감가상각비용 누적액(감가상각누계액)은 2,000만원이 됩니다. 2x19년 말 재무제표 상 유형자산은 다음과 같이 표시됩니다.

구 분	금 액	
건 물	1.2억원	← 취득원가 (또는 재평가금액)
감 가 상 각 누 계 액	(2,000만원)	← 감가상각 누적금액
건 물 장 부 금 액	1억원	← 장부금액

Q

기본재산에 해당하는 자산도 감가상각을 인식해야 하나요?

❖ 기본재산에 해당하는 유형자산이더라도 감가상각 해야 합니다.
공익법인회계기준에서는 자산에서 기본재산을 별도로 관리하지 않고 있으며,
다른 유형자산과 동일하게 회계처리됩니다.

A

Q

기본재산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 기본순자산 금액은 장부금액으로 인식 하나요?

❖ 아닙니다. 기본순자산 금액은 취득원가로 인식하고 감가상각누계액 등은
보통순자산으로 반영합니다.

A



4. 유동부채

- 유동부채란 회계연도 말로부터 1년 이내에 상환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부채입니다. 매입채무/미지급금, 미지급비용, 선수금, 선수수익, 예수금 등이 있습니다.

표 4-6 유동부채의 분류

구 분	설 명
매입채무/미지급금	거래의 대가로 상대방에게 현금 등을 지급해야 할 의무
미 지 급 비 용	기간 경과에 따라 비용을 인식하였으나, 지급기일이 도래하지 않은 채무
선 수 금	재화 및 서비스를 제공하기 전에 미리 수령한 대가
선 수 수 익	현금은 수령하였으나 차기 이후 기간 경과에 따라 인식할 수익
예 수 금	일시적으로 보관하였다가 지출되는 자금

- 매입채무/미지급금은 외상으로 구입하고 아직 지급하지 않은 금액입니다. 공익 법인의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및 서비스를 외상으로 구입한 경우 매입채무로 회계처리하고 그 외의 거래로 발생한 채무는 미지급금으로 처리합니다.
- 선수금은 재화나 서비스 등을 제공하기 전에 대가의 일부 또는 전부를 미리 받은 경우 발생하는 부채입니다. 따라서 선수금을 받은 경우 다른 부채와 달리 현금 지급이 아닌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해야하는 의무가 발생합니다.
- 예수금은 재화나 서비스를 공급한 대가로 받는 돈이 아니라 제 3자를 대신하여 사내에 일시적으로 보관하였다가 지급하는 부채입니다. 예수금은 대표적으로 종업 원에 대한 원천징수예수금과 부가세예수금이 있습니다.

5. 비유동부채

- 비유동부채는 회계연도 말로부터 1년 이후에 만기가 도래하는 부채로 장기차입금, 총당부채, 퇴직급여총당부채, 임대보증금 등이 있습니다.

표 4-7 비유동부채의 분류

구분	설명
차입금	금융기관 등 타인으로부터 조달한 자금
총당부채	지출시거나 지출금액이 불확실한 부채
퇴직급여총당부채	회계연도 말 현재 모든 임직원이 퇴직할 경우 지급해야 할 퇴직금

- 차입금은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금융기관 등 외부로부터 빌려서 조달한 자금을 말합니다. 차입금의 상환기한이 회계연도 말로부터 1년 이내인 경우 단기차입금(유동부채)로 분류하고 그 이외의 경우는 장기차입금으로 분류합니다.

주의사항

공익법인의 임원·종업원·관계회사 등 특수관계자 차입금의 경우 실무적으로 기중에 가수금으로 회계처리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말 결산시점에는 차입금 계정과목으로 재무상태표에 표시해야 합니다.



금융기관이나 단체 등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 해당금액을 수익으로 인식하나요?

❖ 아닙니다. 현금주의 방식의 회계처리와 달리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한 경우 수익이 아닌 부채(계정명: 차입금)로 인식해야 합니다. 또한 차입금을 상환하는 시점에도 비용으로 인식하지 않고 부채의 감소로 회계처리 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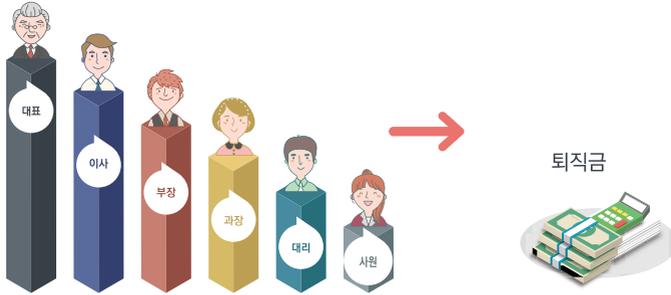
(예시) 차입시점: (차) 현금 XXXX (대) 차입금 XXXX
상환시점: (차) 차입금 XXXX (대) 현금 XXXX

- 회계에서는 지급일자나 지급금액 등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발생가능성이 매우 높고 신뢰성 있게 추정이 가능하다면 부채로 인식합니다. 이러한 부채를 총당부채라고 하며 소송총당부채, 복구총당부채 등이 있습니다.



- 퇴직급여충당부채는 회계연도 말 기준 모든 임직원이 일시에 퇴직하는 경우 지급해야 하는 퇴직금을 말합니다.

그림 4-7 퇴직급여충당부채



현 시점 모든 임직원이 일시에 퇴직하는 경우의 퇴직금 추계액 (평균임금 X 근로연수)

주의사항

퇴직급여충당부채의 표시: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하는 경우 별도로 운용되는 자산은 하나로 통합하여 퇴직연금운용자산으로 표시하고 퇴직급여충당부채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6. 고유목적사업준비금

-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이란 「법인세법」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이나 지정기부금에 사용하기 위해 설정한 지급준비금입니다.

「법인세법」은 공익법인이 공익목적사업운영을 위하여 수익사업소득에 대하여 지급준비금을 설정하면 법인세 일부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 공익법인회계기준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부채 또는 순자산(잉여금)으로 선택하여 회계처리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표 4-8 신고조정과 결산조정에 따른 회계처리

구 분	신고조정	결산조정
개념	비용으로 계산하지 않고 잉여금 처분의 방법으로 인식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비용으로 계산하면서 부채로 인식
재무제표 표시	잉여금 처분(적립금으로 표시)	부채 인식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주의 사항	잉여금처분계산서를 주석으로 작성	유동부채, 비유동부채로 구분하지 않고 별도 표기

주의사항

「법인세법」은 외부회계감사를 받는 법인에 한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세무조정을 통한 손금산입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외부회계감사를 받지 않는 공익법인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각각 비용과 부채로 계상하는 회계처리를 선택해야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부채로 회계처리하는 경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 산업하고자 하는 금액을 운영성과표 비용(고유목적사업준비금전입액)으로 계상하고 이에 상당하는 금액을 재무상태표상의 부채(고유목적사업준비금)로 계산합니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회계처리(결산조정)				
설 정	(차)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전입액 (비용)	XXX	(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부채)	XXX
사 용	(차)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부채)	XXX	(대) 고유목적사업준비금환입액 (수익)	XXX
	(차) 사업비용	XXX	(대) 현금및현금성자산	XXX

○ 주의사항

공익법인회계기준의 '공익목적사업부문'과 '기타사업부문'의 구분기준은 「법인세법」의 '수익사업'과 '그 밖의 사업'의 구분기준과는 다를 수 있으므로, '공익목적사업부문'에서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전입액·환입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순자산으로 회계처리하는 경우, 기말 이후 잉여금처분과정을 통해 보통순자산의 적립금 계정으로 인식합니다. 이 경우에는 이와 관련한 보충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주석으로 잉여금처분계산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회계처리(신고조정)				
설 정	(차) 잉여금 (순자산- 보통순자산)	XXX	(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순자산- 보통순자산)	XXX
사 용	(차) 사업비용	XXX	(대) 현금및현금성자산	XXX
	(차)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순자산- 보통순자산)	XXX	(대) 잉여금 (순자산- 보통순자산)	XXX

표 4-9 잉여금처분계산서 예시

잉여금처분계산서

2x19년 1월 1일부터 2x19년 12월 31일까지 (처분예정일: 2x20.3.31)
2x18년 1월 1일부터 2x18년 12월 31일까지 (처분확정일: 2x19.3.31)

XX재단 (단위: 원)

과목	당기	전기	
미처분잉여금	20,000	14,500	
전기이월미처분잉여금	15,000	10,000	
당기운영이익	5,000	4,500	
임의적립금 등 이입액	3,000	2,000	
고유목적사업준비금환입	3,000	2,000	
잉여금처분액	2,000	1,500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전입	2,000	1,500	
차기이월미처분잉여금	21,000	15,000	

Q 기존에 잉여금처분으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인식하였던 공익법인도 공익법인회계 기준 적용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부채로 인식할 수 있나요?

A 네. 공익법인회계기준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순자산 또는 부채로 선택하여 회계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기존에 잉여금 처분을 통해 회계처리 하다가 부채로 인식방법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회계정책의 변경에 해당하기 때문에 소급하여 적용해야 합니다.



7. 기본순자산

- 기본순자산이란 사용이나 처분에 영구적인 제약이 있는 순자산입니다. 영구적 제약이란 법령 정관 등에 의해 사용이나 처분 시 주무관청 등의 허가가 필요한 경우를 말합니다.
- 기본순자산은 공익법인의 설립과 운영의 공익사업을 수행하는데 재정적 기초가 되는 자원으로서 공익법인의 재무건전성과 지속가능성에 큰 영향을 끼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본순자산과 기본재산은 동일한 개념인가요?

❖ 아닙니다. 기본재산은 사후관리를 목적으로 공익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구분하기 위한 용어로서 회계적 개념이 아닙니다. 기본순자산은 이와 달리 공익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영구적 제약이 있는 자원의 순가치를 의미합니다.



기본순자산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한 경우 회계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 취득한 자산이 기본순자산에 해당하는 경우 취득원가를 기본순자산으로 반영해야 합니다.



그림 4-8 기본순자산



8. 보통순자산

- 보통순자산은 기본순자산이나 순자산조정이 아닌 순자산으로 정의되며, 잉여금과 적립금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 적립금이란 특정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적립해두는 준비금액으로, 잉여금 처분을 통해 적립금으로 반영됩니다. 적립금을 재무제표에 표시할 때는 적립금 각각의 성격에 따라 세부적으로 나눠서 표시하거나 통합하여 적립금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 적립금에는 대표적으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신고조정, 잉여금 처분)이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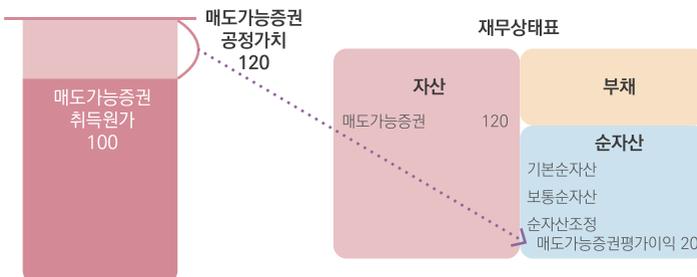
9. 순자산조정

- 순자산조정이란 순자산 가감 성격의 항목으로 유형자산, 매도가능증권 등 자산의 평가로 인한 순자산의 변동내역이 기록됩니다.
- 기본순자산에 해당하는 자산의 평가로 인해 금액이 변동되는 경우 기본순자산을 직접 조정하지 않고, 관련 평가손익을 순자산조정으로 반영합니다.

표 4-10 순자산조정의 구분

구 분	설 명
재 평 가 이 익	유형자산을 재평가하여 장부금액이 증가한 경우 증가액
매도가능증권평가손익	매도가능증권에 대한 미실현보유손익

그림 4-9 순자산조정





2절. 운영성과표

1. 사업수익

- 사업수익은 공익목적사업과 기타사업의 결과로 발생하는 수익을 의미하며, 공익목적사업수익과 기타사업수익으로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합니다.
- 공익목적사업수익은 공익법인의 특성을 반영하여 기부금수익, 보조금수익, 회비수익 등으로 구분하여 표시합니다.
- 기타사업수익은 공익법인에서 기타사업을 운영하여 발생하는 수익으로 특성에 맞게 매출액 등으로 표시합니다.

그림 4-10 사업수익의 구분



(1) 기부금수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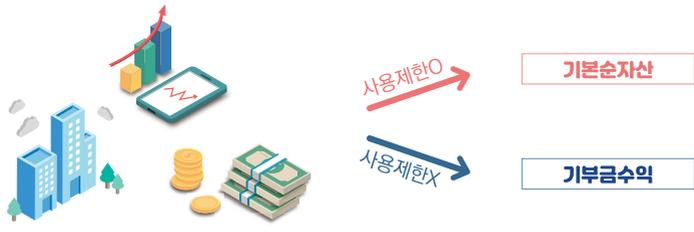
- 기부금은 기부자의 자발적인 의사로 반대급부 없이 공익법인에 출연하는 금전이나 물품을 의미합니다.
- 공익법인회계기준의 수익은 발생주의로 인식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지만 기부금에 대해서는 실제 기부를 받는 시점에 수익으로 인식합니다.
- 실제 기부금을 받지 않고 기부약정만을 한 경우에는 기부자의 의사에 따라 기부로 이어지지 않고 취소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기부약정만으로 기부금수익을 인식할 수 없습니다.

그림 4-11 기부금수익 인식 시점



- 기부금이 기본순자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수익으로 인식하지 않고 기본순자산의 증가로 인식합니다. 기부금이 기본순자산에 해당하는 경우 기부금의 사용과 처분에 제약이 존재하는 것이므로 해당 기부금을 수익으로 인식하는 것은 공익법인의 운영성과를 명확히 나타내지 못하여 기부금수익으로 인식하지 않고 기본순자산의 증가로 인식합니다.
- 예를 들어 거액의 현금을 기부 받아 현금 자체는 사용하지 못하고 현금을 예치하여 발생하는 이자수익으로 장학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기부금으로 받은 현금은 기부금수익이 아니라 기본순자산의 증가로 인식합니다.

그림 4-12 기본순자산에 해당하는 기부금



Q 재능기부나 서비스기부를 받는 경우 기부금수익을 인식할 수 있나요?

A 현금이나 현물이 아닌 재능이나 서비스를 기부 받는 경우 재능 및 서비스에 대한 가치를 합리적으로 산정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기부금수익으로 인식할 수 없습니다.



(2) 보조금수익

-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보조금은 직접적인 반대급부 없이 지급받는 것이므로 정부부처 외 기관 및 개인으로부터 수령하는 기부금과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 그래서 보조금도 기부금과 동일하게 실제 받는 시점에 수익으로 인식하여야 하고, 보조금이 기본순자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수익이 아닌 기본순자산의 증가로 인식해야 합니다.
- 한편, 공익법인회계기준에서는 보조금과 기부금을 구분해서 표시하기 위해 보조금 수익은 기부금수익과 별도의 계정으로 인식합니다.
- 보조금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직접 지급받는 보조금 뿐 아니라 공공기관이나 공익법인이 1차적으로 받은 보조금을 간접적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도 보조금수익으로 인식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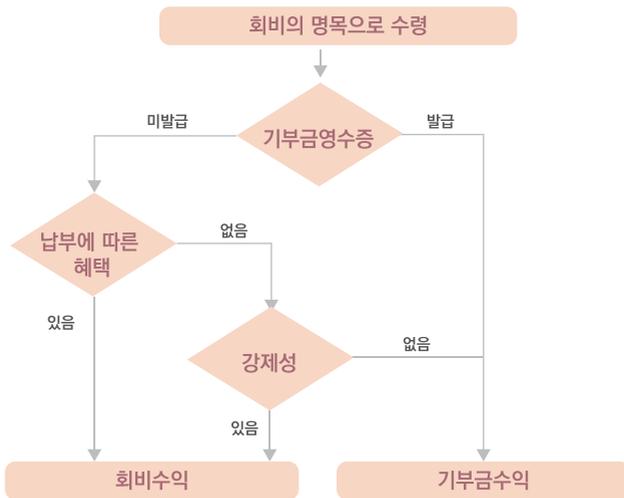
그림 4-13 직접보조금 및 간접보조금



(3) 회비수익

- 회원을 대상으로 받는 회비는 회비수익으로 인식하는데 회비의 명목으로 받지만 실질적으로 기부금인 경우에는 회비수익이 아닌 기부금수익으로 인식해야 합니다.
- 회비의 명목으로 받지만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해주거나, 납부에 따른 혜택이나 강제성이 없는 경우에는 기부금수익으로 인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 기부금 성격의 회비를 받는 경우 기부금수익으로 인식하지만 공익법인의 판단에 따라 기부금수익의 하위로 일반기부금과 회원으로부터의 기부금 등으로 세분화하여 보다 효과적인 정보제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림 4-14 회비수익과 기부금수익 구분



공익법인의 후원회원으로 등록된 회원으로부터 후원회비를 납부 받는 경우에도 회비수익으로 인식해야 하나요?

💡 후원회비의 경우 실질 성격을 판단하여 기부금에 해당한다면 회비수익이 아닌 기부금수익으로 인식해야 합니다.





2. 사업비용

- 사업비용은 공익목적사업과 기타사업의 결과로 발생하는 비용을 의미하며, 사업 비용도 공익목적사업비용과 기타사업비용으로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합니다.
- 공익목적사업비용은 사업수행비용, 일반관리비용, 모금비용으로 구분하여 표시하며, 사업수행비용, 일반관리비용, 모금비용을 분배비용, 인력비용, 시설비용, 기타비용으로 구분한 정보를 운영성과표 본문이나 주석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 기타사업비용은 기타사업 유형에 따라 자유롭게 표시할 수 있으며, 인력비용, 시설비용, 기타비용으로 구분한 정보를 운영성과표 본문이나 주석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림 4-15 사업비용의 분류



1) 사업비용의 기능별 구분

(1) 사업수행비용

- 사업수행비용은 공익법인이 추구하는 본연의 임무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의미합니다.
- 장학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장학금 지급액, 장애인지원사업을 하는 경우 장애인지원 복지사의 급여, 취약계층 지원사업을 하는 경우 지원물품비용, 학술연구사업의 경우 연구비용 등 공익목적활동을 수행하며 발생하는 비용을 사업수행비용으로 인식합니다.

- 사업수행비용과 일반관리비용의 구분을 어려워하는 경우가 많은데, 공익목적활동에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사업수행비용으로 인식하며 공익목적활동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발생하는 간접적인 비용을 일반관리비용으로 인식합니다.

그림 4-16 사업수행비용과 일반관리비용



- 사업수행비용은 공익법인이 수행하는 공익목적활동에서 발생하는 비용으로 다양한 종류의 공익목적활동을 수행하는 공익법인의 경우 각각의 활동에 투입되는 비용을 명확히 알기 어렵습니다. 이 경우 사업수행비용을 세부사업별로 구분한 정보를 운영성과표 본문이나 주석에 기재할 수 있습니다.
- 사업수행비용을 세부사업별로 구분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공익법인이 어느 분야에 중점적으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를 보여줄 수 있어 기부자들의 의사판단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림 4-17 사업수행비용의 세부사업별 구분정보

	공익목적	기타사업		공익목적	기타사업
사업비용	xxx	-	사업비용	xxx	-
사업수행비용	xxx	-	사업수행비용	xxx	-
			A사업수행비용	xxx	-
			B사업수행비용	xxx	-
일반관리비용	xxx	-	C사업수행비용	xxx	-
			일반관리비용	xxx	-
모금비용	xxx	-	모금비용	xxx	-

〈사업수행비용만 표기〉

〈사업수행비용의 세부사업별 구분 표시〉



(2) 일반관리비용

- 일반관리비용은 기획, 인사, 재무, 감독 등 공익법인의 제반 관리활동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말합니다. 직접적인 사업수행을 하는 부서가 아닌 지원부서(경영지원실, 인사팀, 총무팀, 회계팀 등)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일반관리비용으로 인식합니다.
- 지원부서에서 발생하는 비용 중 모금활동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별도의 모금비용으로 인식하고 모금활동과 관련되지 않는 비용은 일반관리비용으로 인식합니다.
- 공익목적사업수행과 지원업무를 동시에 수행하는 경우에는 적절한 기준을 만들어 비용을 배분하여야 합니다. 배분하는 기준은 시설면적, 사용빈도, 업무시간 등이 될 수 있으며 이외에도 합리적이라 판단되는 기준으로 배분하여도 됩니다.
- 다만, 공익목적사업수행과 지원업무를 동시에 수행하기는 하지만 어느 한 쪽의 비중이 월등히 많은 경우라면 비용의 배분 없이 비중이 높은 쪽으로 비용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3) 모금비용

- 모금비용은 모금홍보, 모금행사, 기부자리스트관리, 모금 고지서 발송 등의 모금 활동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의미합니다. 모금홍보는 모금홍보영상제작, 거리모금활동, 모금광고 등이 있고, 모금행사는 후원의 밤, 자선모금행사 등이 있습니다. 기부자 리스트관리에는 기부금영수증 발행, 기부자관리시스템 유지 등이 있으며, 모금 고지서 발송에는 모금 고지서 제작, 우편료 등이 있습니다.
- 공익법인회계기준의 모금비용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서 의미하는 모집비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공익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모금비용을 세분화하여 표시할 수 있습니다.
- 예를 들어 「기부금품법」에 의한 모집비용과 기타모금비용, 혹은 신규 기부자 모금비용과 기존 기부자 모금비용 등 공익법인의 필요에 따라 세분화 할 수 있습니다.
- 모금활동을 하는 공익법인은 모금비용이 반드시 발생할 수밖에 없으며 기부금 모금실적이 공익법인의 역량을 잘 나타낼 수 있다는 측면에서 모금활동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명확히 구분하여 표시하는 것이 모금활동을 수행하는 공익법인의 운영성과를 잘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림 4-18 모금비용



2) 사업비용의 성격별 구분

- 사업비용을 사업수행비용, 일반관리비용, 모금비용으로 구분하는 것은 기능별로 구분하는 것이고 사업비용을 분배비용, 인력비용, 시설비용, 기타비용으로 구분하는 것은 성격별로 구분하는 것입니다.

(1) 분배비용

- 분배비용은 공익법인이 수혜자 또는 수혜단체에 직접 지급하는 비용으로 장학금, 지원금 등을 포함합니다. 수혜자나 수혜단체는 공익목적사업을 통해 지원을 받게 되는 개인 및 단체를 의미합니다.
-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 뿐 아니라 현물로 직접 지원하는 것도 분배비용으로 인식합니다. 저소득층 학생을 위해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 저소득층 가정에 의류·식품 등을 전달하는 것, 다른 공익법인에 공익사업수행을 위해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도 분배비용이 됩니다.
- 분배비용은 공익법인의 공익목적사업수행으로 직접 지급하는 것이므로 사업수행 비용에서만 발생할 수 있으며 일반관리비용이나 모금비용에서는 발생할 수 없습니다.

◉ 그림 4-19 분배비용



(2) 인력비용

- 인력비용은 공익법인에 고용된 인력과 관련된 비용으로서 급여, 상여금, 퇴직급여, 복리후생비, 교육훈련비 등이 포함됩니다.
- 공익목적사업을 수행하는 인력, 지원부서의 인력, 모금활동을 하는 인력이 각각 존재할 수 있으므로 인력비용은 사업수행비용, 일반관리비용, 모금비용 모두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공익목적사업, 지원업무, 모금활동을 함께 수행하는 인력이 있는 경우에는 업무시간 등 합리적인 기준으로 인력에 지급되는 비용을 배분하여 인식해야 합니다. 다만



동시에 수행하는 업무 중 어느 한 쪽의 비중이 월등히 많은 경우라면 비중이 높은 쪽으로 인식할 수 있습니다.

- 인력비용으로 구분되는 기준은 공익법인의 고용여부이므로 고용되지 않은 인력에 지급되는 비용은 인력비용이 아닌 기타비용으로 인식해야 합니다. 고용관계가 없는 파견직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비용은 인력비용으로 인식할 수 없습니다.

Q 파견근로직(사무보조), 초청 강사 등에 지급되는 비용은 인력비용인가?

A 공익법인과 고용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인력비용으로 인식할 수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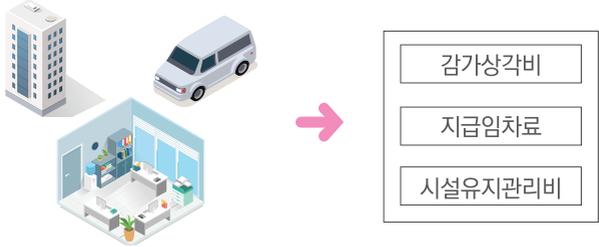
Q 자원봉사자들에 지출된 비용을 인력비용으로 인식할 수 있나?

A 인력비용은 공익법인에 고용된 인력과 관련된 비용입니다. 공익법인과 고용관계가 없는 자원봉사자들에게 지출된 비용은 인력비용으로 인식할 수 없습니다.

(3) 시설비용

- 시설비용은 공익법인의 운영에 사용되는 토지, 건물, 구축물, 차량운반구 등 시설과 관련된 비용으로서 감가상각비, 지급임차료, 시설보험료, 시설유지관리비 등이 포함됩니다.
- 시설의 경우에도 공익목적사업 수행을 위한 시설, 지원부서의 시설, 모금활동을 위한 시설이 각각 존재할 수 있으므로 사업수행비용, 일반관리비용, 모금비용 모두에서 시설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공익목적사업, 지원업무, 모금활동을 함께 수행하는 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시설면적 등 합리적인 기준으로 시설에 사용되는 비용을 배분하여 인식해야 합니다. 다만 동시에 수행하는 시설 중 어느 한 쪽의 비중이 월등히 많은 경우라면 비중이 높은 쪽으로 인식할 수 있습니다.

그림 4-20 시설비용



(4) 기타비용

- 기타비용은 분배비용, 인력비용, 시설비용 이외의 비용으로 여비교통비, 소모품비, 지급수수료, 용역비, 업무추진비, 회의비, 대손상각비 등을 포함합니다.
- 사업수행을 위해 지출되는 비용 중 수혜자 또는 수혜단체에 직접 지급하는 비용(분배비용)이 아니며, 고용된 인력에 지급되는 비용(인력비용)이 아니며, 시설과 관련한 비용(시설비용)이 아닌 비용을 사업수행비용의 기타비용으로 인식합니다.
- 마찬가지로 일반관리비용, 모금비용에서도 고용된 인력에 지급되는 비용(인력비용)이나 시설과 관련한 비용(시설비용)이 아닌 비용을 기타비용으로 인식합니다.

3) 사업비용의 기능별 성격별 교차분류

- 사업비용은 사업수행비용, 일반관리비용, 모금비용으로 구분하여야 하며 이를 다시 분배비용, 인력비용, 시설비용, 기타비용으로 구분하여 표시해야 합니다. 분배비용, 인력비용, 시설비용, 기타비용으로 구분한 정보는 운영성과표 본문에 표시하거나 주석으로 기재할 수 있습니다.
- 사업수행비용, 일반관리비용, 모금비용으로 구분한 정보를 다시 분배비용, 인력비용, 시설비용, 기타비용으로 교차분류하여 표시하게 되면 사업비용 전체에서 각각의 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을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 운영성과표 본문에 표시하는 경우 사업수행비용, 일반관리비용, 모금비용 하단에 각각 분배비용, 인력비용, 시설비용, 기타비용을 표시합니다.



● 그림 4-21 운영성과표 표시방법

	공익목적	기타사업
사업비용	xxx	xxx
사업수행비용	xxx	-
분배비용	xxx	-
인력비용	xxx	-
시설비용	xxx	-
기타비용	xxx	-
일반관리비용	xxx	-
인력비용	xxx	-
시설비용	xxx	-
기타비용	xxx	-
모금비용	xxx	-
인력비용	xxx	-
시설비용	xxx	-
기타비용	xxx	-
기타사업비용	-	xxx
인력비용	-	xxx
시설비용	-	xxx
기타비용	-	xxx

- 주석에 표시하는 경우 아래 표의 모양과 같이 구분하여 작성합니다.

● 그림 4-22 주석 표시방법

	분배비용	인력비용	시설비용	기타비용	합계
공익목적사업비용	xxx	xxx	xxx	xxx	xxx
사업수행비용	xxx	xxx	xxx	xxx	xxx
일반관리비용	-	xxx	xxx	xxx	xxx
모금비용	-	xxx	xxx	xxx	xxx
기타사업비용	-	xxx	xxx	xxx	xxx
합 계	xxx	xxx	xxx	xxx	xxx

3. 사업외수익

- 사업외수익은 사업수익이 아닌 수익 또는 차익으로서 유형·무형자산처분이익, 유형·무형자산손상차손환입, 전기오류수정이익 등으로 합니다.

(1) 이자·배당수익

- 이자·배당수익은 투자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자·배당을 의미하며 이것은 기본적으로 사업외수익에 해당합니다. 다만, 이자·배당수익이 사업활동의 주된 원천이 되는 경우 사업외수익이 아닌 사업수익으로 분류하여 공익법인의 사업을 명확하게 보여 줄 수 있습니다.
- 예를 들어 공익법인이 거액의 기부금을 받아 정기예금에 단순 예치하여 발생하는 이자수익(공익목적사업)으로 공익사업을 주로 운영하는 경우 해당 이자수익은 공익목적사업부분의 사업수익으로 인식합니다.
- 장학재단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적극적인 금융상품 투자를 통해 발생하는 금융수익(기타사업)으로 공익사업을 주로 운영하는 경우 해당 금융수익을 기타사업부분의 사업수익으로 인식합니다.

그림 4-23 이자·배당수익의 사업수익인식

	공익목적	기타사업
사업수익	xxx	xxx
기부금수익	xxx	-
보조금수익	xxx	-
회비수익	xxx	-
이자수익	xxx	xxx
사업비용	xxx	xxx
사업수행비용	xxx	-
일반관리비용	xxx	-
모금비용	xxx	-
사업외수익	xxx	xxx
이자수익	xxx	xxx
배당수익	xxx	xxx
유형자산처분이익	xxx	xxx

이자수익이 사업활동의 주된 원천인 경우



(2) 유형·무형자산처분이익, 손상차손환입 등

- 사업외수익의 다른 항목으로는 유형·무형자산처분이익, 유형·무형자산손상차손환입, 전기오류수정이익, 외환차익, 외화환산이익 등이 있습니다.
- 유형·무형자산처분이익은 유형·무형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처분금액이 장부금액보다 큰 경우 발생하는 이익 금액을 의미합니다. 처분금액을 최초 취득금액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감가상각 등을 반영한 처분 시 장부금액과 비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시) 2x18년 1월 1일 A공익법인은 공익사업업무에 활용할 승합차(차량운반구)를 3,100만원에 취득하였습니다. A공익법인은 차량운반구를 정액법으로 상각하고 있고 차량운반구의 잔존가치는 100만원, 내용연수는 5년입니다.

정액법으로 상각하므로 감가상각비용은 매년 600만원($3,100\text{만원} - 100\text{만원} \div 5\text{년}$)씩 일정하게 발생합니다. 2x19년 12월 31일 차량운반구의 감가상각누계액은 1,200만원입니다.

2x19년 12월 31일 차량운반구 장부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금 액	
차 량 운 반 구	3,100만원	← 취득원가
감 가 상 각 누 계 액	(1,200만원)	
차량운반구 장부금액	1,900만원	← 장부금액

A공익법인이 2x19년 12월 31일 위 차량운반구를 2,000만원에 처분하는 경우 A공익법인이 인식해야 하는 유형자산처분이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begin{aligned} \text{유형자산처분이익} &= \text{유형자산 처분금액} - \text{유형자산 장부금액} \\ &= 2,000\text{만원} - 1,900\text{만원} = 100\text{만원} \end{aligned}$$

- 유형·무형자산손상차손환입은 과거에 유형·무형자산의 손상차손을 인식하였다가 유형·무형자산의 손상이 회복되었다고 판단하여 과거 인식한 손상차손을 환입하는 경우 발생하는 계정입니다.
- 전기오류수정이익은 과거의 재무제표에 포함된 회계적 오류를 당기에 발견하여 수정을 하게 되어 당기운영이익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 전기오류수정이익으로 반영합니다.
- 외환차익, 외화환산이익은 외화자산·부채가 있는 경우 환율의 변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차익·이익을 의미합니다.

4. 사업외비용

- 사업외비용은 사업비용이 아닌 비용 또는 차손으로서 유형·무형자산처분손실, 유형·무형자산손상차손, 유형자산재평가손실, 기타의 대손상각비, 전기오류수정손실, 외환차손, 외화환산손실 등으로 합니다.
- 유형·무형자산처분손실은 유형·무형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처분금액이 장부금액보다 작은 경우 발생하는 손실 금액을 의미합니다. 처분이익을 인식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처분금액을 최초 취득금액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감가상각등을 반영한 처분 시 장부금액과 비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유형·무형자산손상차손은 유형·무형자산의 진부화, 시장가치의 급격한 하락 등으로 인해 유형·무형자산의 가치가 크게 손상되어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에 중요하게 미달하게 되는 경우 손상을 인식하게 되고 그 때의 차액을 손상차손으로 인식합니다.
- 유형자산재평가손실은 유형자산의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하여 재평가를 하는 경우 재평가로 인해 장부금액이 감소하게 되면 그 감소액을 의미합니다.
- 기타의 대손상각비는 미수금과 매출채권 이외의 채권에 대하여 회수가 불확실한 경우 합리적으로 추정한 대손추산액을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하는데 이에 대한 상대 계정으로 대손상각비를 인식합니다.
- 전기오류수정손실은 과거의 재무제표에 포함된 회계적 오류를 당기에 발견하여 수정을 하게 되어 당기운영이익이 감소하게 되는 경우 전기오류수정손실로 반영합니다.
- 외환차손, 외화환산손실은 외화자산 부채가 있는 경우 환율의 변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차손·손실을 의미합니다.



5.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전입액·환입액

-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법인세법」에 따라 수익사업에 발생한 소득 중 일부를 고유목적사업이나 지정기부금에 지출하기 위하여 적립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전입액·환입액을 운영성과표에 수익·비용으로 인식하는 경우에 사업외수익·사업외비용으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항목으로 인식합니다.

6. 법인세비용

- 공익법인이 「법인세법」에서 규정하는 수익사업을 운영하여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를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운영성과표에 법인세비용을 인식할 때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2장 법인세회계와 제31장 중소기업회계처리특례의 법인세회계처리를 고려하여 법인세비용을 인식합니다.
- 일반기업회계기준의 법인세회계를 따라 자산·부채의 세무기준액과 장부금액의 차이에 대해 이연법인세를 인식하는 방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 또한 중소기업회계처리특례에 따라 「법인세법」 등에 의하여 실제 납부하여야 할 금액을 법인세비용으로 계상할 수 있습니다.
- 규모가 작은 공익법인이 일반기업회계기준의 법인세회계를 적용하여 이연법인세를 인식하는 방법으로 법인세를 회계처리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므로 중소기업회계처리특례에 따라 실제 납부하여야 할 금액을 법인세비용으로 계상하는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유용할 것입니다.



법인세비용은 기타사업부문에만 발생하나요?

📍 법인세비용은 「법인세법」에 따라 발생하는 것이므로 공익목적사업 중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이 있는 경우(예를 들어 전시, 공연사업 수익 등)에는 공익목적사업 부문에서도 법인세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알기 쉬운 공익법인회계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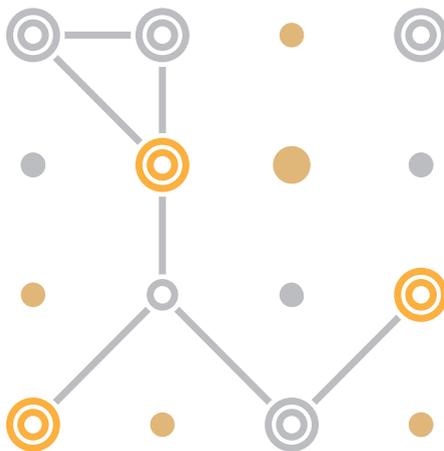


알기 쉬운
공익법인회계기준



5장

특수한 회계처리





5장 특수한 회계처리

1. 통합재무제표 작성 및 내부거래 제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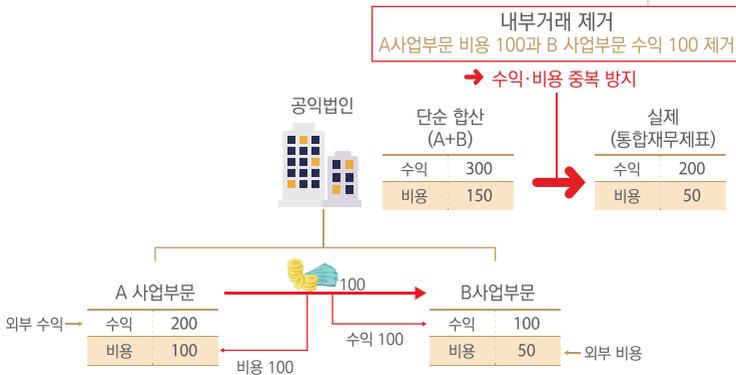
(1) 통합재무제표 작성 의의

- 공익법인회계기준은 공익목적사업과 기타사업으로 구분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지만, 공익법인 전체를 하나의 작성단위로 보아 통합재무제표도 작성하도록 규정합니다.
- 이를 통해 기부자 등 이해관계자들은 부문별 회계정보 뿐만 아니라 공익법인 전체의 재무상태나 운영성과에 대한 다양한 회계 정보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2) 통합재무제표 작성 및 내부거래 제거

- 공익법인이 통합재무제표를 작성할 때는 공익목적사업과 기타사업부문 각각의 재무제표와 각 사업부문 간의 내부거래를 제거한 통합재무제표를 함께 표시해야 합니다.
- 내부거래 제거란 공익법인 내 사업부문 간의 거래를 통해 발생한 채권·채무(미수금, 미지급금 등) 및 수익·비용(전출금, 전입금 등)의 상계제거를 의미합니다.
- 내부거래 제거로 인해 통합재무제표상 금액과 공익목적사업과 기타사업을 단순 합산한 금액은 다를 수 있으며, 이러한 내용은 공익법인의 선택에 따라 주석사항으로 공시할 수 있습니다.

그림 5-1 내부거래의 이해



2. 구분회계

- 공익법인회계기준은 공익목적사업부문과 기타사업부문으로 구분한 재무제표를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표 5-1 재무제표 체계

재무상태표			운영성과표		
통합	공익목적	기타	통합	공익목적	기타
자산	자산	자산	사업수익 (-)사업비용 사업이익	사업수익 (-)사업비용 사업이익	사업수익 (-)사업비용 사업이익
부채	부채	부채	사업외수익 (-)사업외비용 고유목적사업운영비용전입액 고유목적사업운영비용환입액 법인세지급전항기운영이익	사업외수익 (-)사업외비용 고유목적사업운영비용전입액 고유목적사업운영비용환입액 법인세지급전항기운영이익	사업외수익 (-)사업외비용 고유목적사업운영비용전입액 고유목적사업운영비용환입액 법인세지급전항기운영이익
순자산	순자산	순자산	(-)법인세비용 당기운영이익	(-)법인세비용 당기운영이익	(-)법인세비용 당기운영이익

- '공익목적사업'과 '기타사업'의 구분은 정관상 기재된 공익목적사업을 기준으로 하며, 구분회계를 통해 공익사업과 그 외의 사업 정보를 구분함으로써 공익활동의 수행결과를 좀 더 명확하게 보여주는 장점이 있습니다.

표 5-2 구분회계 예시



「법인세법」상의 구분경리와 공익법인회계기준에서 말하는 구분회계의 구분 기준은 동일하다고 볼 수 있나요?



「법인세법」에서 '수익사업'과 '수익사업이 아닌 그 밖의 사업'으로 구분하는 기준과 공익법인회계기준이 '공익목적사업'과 '기타사업'으로 구분하는 기준은 별개로 보아야 합니다. 즉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 해당하더라도 정관상 기재된 공익목적사업이라면 공익법인회계기준에서는 '공익목적사업'으로 분류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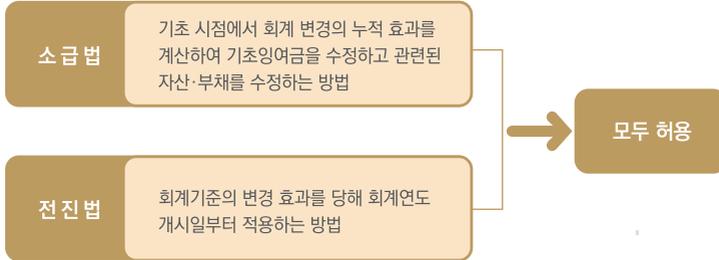




3. 공익법인회계기준 최초 적용

- 공익법인회계기준을 적용하지 않았던 공익법인이 공익법인회계기준을 최초로 적용하는 경우에는 소급해서 적용하거나 전진적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소급적용이란 공익법인회계기준을 처음부터 적용하였다고 가정하고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방법입니다.
- 전진적용이란 공익법인회계기준 이전의 회계처리는 그대로 인정하고 당기와 그 이후의 회계연도에만 공익법인회계기준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 일반적으로 회계기준은 소급해서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공익법인회계기준에서는 공익법인의 작성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전진적으로 회계처리 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표 5-3 공익법인회계기준의 최초 적용 방법



주의사항

기존에 현금주의·단식부기를 적용하던 공익법인의 경우 최초 도입 시 공익법인회계기준에서 인식을 요구하는 모든 자산과 부채가 누락되지 않고 모두 계상될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여기서 의미하는 자산과 부채는 당기 발생 분 뿐 아니라 회계연도 말 시점에 공익법인이 지배하거나 소유한 모든 자산과 부담하고 있는 모든 부채를 포함합니다.

알기 쉬운 공익법인회계기준





[별지 제1호 서식]

재무상태표

제×기 20××년×월×일 현재

제×기 20××년×월×일 현재

공익법인명

(단위: 원)

과 목	당 기			전 기		
	통합	공익목적사업	기타사업	통합	공익목적사업	기타사업
자 산						
유동자산	×××	×××	×××	×××	×××	×××
현금및현금성자산	×××	×××	×××	×××	×××	×××
단기투자자산	×××	×××	×××	×××	×××	×××
매출채권	×××	×××	×××	×××	×××	×××
(-) 대손충당금	(×××)	(×××)	(×××)	(×××)	(×××)	(×××)
선급비용	×××	×××	×××	×××	×××	×××
미수수익	×××	×××	×××	×××	×××	×××
미수금	×××	×××	×××	×××	×××	×××
(-) 대손충당금	(×××)	(×××)	(×××)	(×××)	(×××)	(×××)
선급금	×××	×××	×××	×××	×××	×××
재고자산	×××	×××	×××	×××	×××	×××
.....	×××	×××	×××	×××	×××	×××
비유동자산	×××	×××	×××	×××	×××	×××
투자자산	×××	×××	×××	×××	×××	×××
장기성예적금	×××	×××	×××	×××	×××	×××
장기투자증권	×××	×××	×××	×××	×××	×××
장기대여금	×××	×××	×××	×××	×××	×××
.....	×××	×××	×××	×××	×××	×××
유형자산	×××	×××	×××	×××	×××	×××
토지	×××	×××	×××	×××	×××	×××
건물	×××	×××	×××	×××	×××	×××
(-)감가상각누계액	(×××)	(×××)	(×××)	(×××)	(×××)	(×××)
구축물	×××	×××	×××	×××	×××	×××
(-)감가상각누계액	(×××)	(×××)	(×××)	(×××)	(×××)	(×××)
기계장치	×××	×××	×××	×××	×××	×××
(-)감가상각누계액	(×××)	(×××)	(×××)	(×××)	(×××)	(×××)
차량운반구	×××	×××	×××	×××	×××	×××
(-)감가상각누계액	(×××)	(×××)	(×××)	(×××)	(×××)	(×××)
건설중인자산	×××	×××	×××	×××	×××	×××
.....	×××	×××	×××	×××	×××	×××

무형자산	×××	×××	×××	×××	×××	×××
지식재산권	×××	×××	×××	×××	×××	×××
개발비	×××	×××	×××	×××	×××	×××
컴퓨터소프트웨어	×××	×××	×××	×××	×××	×××
광업권	×××	×××	×××	×××	×××	×××
임차권리금	×××	×××	×××	×××	×××	×××
.....	×××	×××	×××	×××	×××	×××
기타비유동자산	×××	×××	×××	×××	×××	×××
임차보증금	×××	×××	×××	×××	×××	×××
장기선급비용	×××	×××	×××	×××	×××	×××
장기미수금	×××	×××	×××	×××	×××	×××
.....	×××	×××	×××	×××	×××	×××
자 산 총 계	×××	×××	×××	×××	×××	×××
부 채						
유동부채	×××	×××	×××	×××	×××	×××
단기차입금	×××	×××	×××	×××	×××	×××
매입채무	×××	×××	×××	×××	×××	×××
미지급비용	×××	×××	×××	×××	×××	×××
미지급금	×××	×××	×××	×××	×××	×××
선수금	×××	×××	×××	×××	×××	×××
선수수익	×××	×××	×××	×××	×××	×××
예수금	×××	×××	×××	×××	×××	×××
유동성장기부채	×××	×××	×××	×××	×××	×××
.....	×××	×××	×××	×××	×××	×××
비유동부채	×××	×××	×××	×××	×××	×××
장기차입금	×××	×××	×××	×××	×××	×××
임대보증금	×××	×××	×××	×××	×××	×××
퇴직급여충당부채	×××	×××	×××	×××	×××	×××
(-)퇴직연금운용자산	(×××	(×××	(×××	(×××	(×××	(×××
.....	×××	×××	×××	×××	×××	×××
고유목적사업준비금	×××	×××	×××	×××	×××	×××
부 채 총 계	×××	×××	×××	×××	×××	×××
순자산¹⁾						
기본순자산	×××	×××	×××	×××	×××	×××
보통순자산	×××	×××	×××	×××	×××	×××
적립금	×××	×××	×××	×××	×××	×××
잉여금	×××	×××	×××	×××	×××	×××
순자산조정	×××	×××	×××	×××	×××	×××
순자산 총계	×××	×××	×××	×××	×××	×××
부채 및 순자산 총계	×××	×××	×××	×××	×××	×××



[별지 제2호 서식]

운영성과표

제×기 20××년×월×일부터 20××년×월×일까지

제×기 20××년×월×일부터 20××년×월×일까지

공익법인명

(단위: 원)

과 목	당 기			전 기		
	통합	공익목적사업	기타사업	통합	공익목적사업	기타사업
사업수익	×××	×××	×××	×××	×××	×××
기부금수익	×××	×××	-	×××	×××	-
보조금수익	×××	×××	-	×××	×××	-
회비수익	×××	×××	-	×××	×××	-
투자자산수익	×××	×××	-	×××	×××	-
매출액	×××	×××	-	×××	×××	-
.....	×××	×××	-	×××	×××	-
사업비용²⁾	×××	×××	×××	×××	×××	×××
사업수행비용	×××	×××	-	×××	×××	-
○사업수행비용	×××	×××	-	×××	×××	-
△사업수행비용	×××	×××	-	×××	×××	-
.....	×××	×××	-	×××	×××	-
일반관리비용	×××	×××	-	×××	×××	-
모금비용	×××	×××	-	×××	×××	-
.....	×××	-	×××	×××	-	×××
사업이익(손실)	×××	×××	×××	×××	×××	×××
사업외수익	×××	×××	×××	×××	×××	×××
유형자산손상처분환입	×××	×××	×××	×××	×××	×××
유형자산처분이익	×××	×××	×××	×××	×××	×××
무형자산손상처분환입	×××	×××	×××	×××	×××	×××
무형자산처분이익	×××	×××	×××	×××	×××	×××
전기오류수정이익	×××	×××	×××	×××	×××	×××
.....	×××	×××	×××	×××	×××	×××
사업외비용	×××	×××	×××	×××	×××	×××
기타의 대손상각비	×××	×××	×××	×××	×××	×××
유형자산손상처분손	×××	×××	×××	×××	×××	×××
유형자산처분손실	×××	×××	×××	×××	×××	×××
유형자산재평가손실 ⁴⁾	×××	×××	×××	×××	×××	×××
무형자산손상처분손	×××	×××	×××	×××	×××	×××
무형자산처분손실	×××	×××	×××	×××	×××	×××
전기오류수정손실	×××	×××	×××	×××	×××	×××
.....	×××	×××	×××	×××	×××	×××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전입액	×××	×××	×××	×××	×××	×××
고유목적사업준비금환입액	×××	×××	×××	×××	×××	×××
법인세비용차감전						
당기운영이익(손실)	×××	×××	×××	×××	×××	×××
법인세비용	×××	×××	×××	×××	×××	×××
당기운영이익(손실)	×××	×××	×××	×××	×××	×××

* 1 순자산의 변동에 관한 사항은 아래와 같이 주석으로 기재한다.

과 목	통합			공익목적사업부문					기타사업부문			
	기본 순자산	보통순자산		순자산 조정	기본 순자산	보통순자산		순자산 조정	기본 순자산	보통순자산		순자산 조정
		적립금	잉여금			적립금	잉여금			적립금	잉여금	
전기초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
회계정책변경누적효과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
전기오류수정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
수정후 순자산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
기본순자산증감	xxx		(xxx)		xxx		(xxx)		xxx		(xxx)	
당기운영이익(손실)			xxx				xxx				xxx	
매도가능증권평가이익				xxx				xxx				xxx
유형자산재평가이익				xxx				xxx				xxx
적립금 전입		xxx	(xxx)			xxx	(xxx)			xxx	(xxx)	
.....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
전기말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
당기초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
회계정책변경누적효과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
전기오류수정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
수정후 순자산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
기본순자산증감	xxx		(xxx)		xxx		(xxx)		xxx		(xxx)	
당기운영이익(손실)			xxx				xxx				xxx	
매도가능증권평가이익				xxx				xxx				xxx
유형자산재평가이익				xxx				xxx				xxx
적립금 전입		xxx	(xxx)			xxx	(xxx)			xxx	(xxx)	
.....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
당기말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



* 2 사업비용의 기능별 구분과 성격별 구분에 관한 정보를 아래와 같이 주석으로 기재한다.

(주석기재 예시) 주석 YY. 사업비용의 성격별 구분

운영성과표에는 사업비용이 기능별로 구분되어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를 다시 성격별로 구분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분배비용	인력비용	시설비용	기타비용	합계
공익목적사업비용	xxx	xxx	xxx	xxx	xxx
사업수행비용	xxx	xxx	xxx	xxx	xxx
일반관리비용	-	xxx	xxx	xxx	xxx
모금비용	-	xxx	xxx	xxx	xxx
기타사업비용	-	xxx	xxx	xxx	xxx
합 계	-	xxx	xxx	xxx	xxx

* 분배비용이 없는 공익법인인은 해당 계정을 삭제할 수 있다.

또는 공익법인의 선택에 따라 위 정보를 운영성과표 본문에 다음과 같이 직접 표시할 수도 있다.

I. 공익목적사업비용	(xxx)
1. 사업수행비용	(xxx)
분배비용	(xxx)
인력비용	(xxx)
시설비용	(xxx)
기타비용	(xxx)
2. 일반관리비용	(xxx)
인력비용	(xxx)
시설비용	(xxx)
기타비용	(xxx)
3. 모금비용	(xxx)
인력비용	(xxx)
시설비용	(xxx)
기타비용	(xxx)
II. 기타사업비용	(xxx)
인력비용	(xxx)
시설비용	(xxx)
기타비용	(xxx)

* 3 공익법인회계기준 제27조제6항에 따라 기타사업비용을 더 상세하게 구분한 정보를 주석으로 기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기타사업비용을 매출원가와 판매관리비로 구분하여 주석으로 기재할 수 있다.

* 4 유형자산재평가손실은 사업외비용으로 표시한다.

알기 쉬운
공익법인회계기준



참여연구진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김 완 희 소장 박 윤 진 팀장 장 지 원 특수전문직4급 최 중 갑 특수전문직4급
발 행 일	2020년 5월
발 행 인	김 유 찬
발 행 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주 소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36
전 화	(044)414-2114(대)
웹 사 이 트	www.kipf.re.kr
디자인 기획 인쇄	경성문화사 (044)868-3537



알기 쉬운

공익법인회계기준
